

투자설명서 등 변경 안내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 수리일:** 2014년 1월 16일(목)

□ **대상 펀드**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주요 변경사항**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집합투자기구의 연혁내용 추가	하단 표1 참조	하단 표1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0)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 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p> <p>-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지방소득세포함)</p> <p>- 특별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p>	<p>-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p> <p>-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p>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지방소득세 포함)	세 (지방소득세 포함)

[표 1]

정정전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9. 6. 30.	최초 설정

정정후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9. 6. 30.	최초 설정
2010. 7. 26.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연 0.05% -> 연 0.04%)
2012. 1. 9.	운용전문인력 변경 (박경립 -> 유재홍)
2012. 4. 24.	운용전문인력 추가 (유재홍 -> 유재홍, 박경립)
2013. 4. 10.	종류 C-P 신설
2013. 6. 19.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연0.028% -> 연0.025%)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집합투자기구 의 연혁내용 추 가	하단 표1 참조	하단 표1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0)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	법시행령 제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 산과의 거래
제2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연금저 축계좌 가입자에 대 한 과세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 <u>소득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u> -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 득세 <u>22%</u> (지방소득세포함) - <u>특별 중도해지(연금외수령)</u>	- <u>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 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 제 12%. 단, 연금계좌 세액공 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 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 용</u> -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 득세 <u>16.5%</u> (지방소득세 포 함, <u>종합과세 가능</u>) - <u>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u>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u>사유</u>: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u>치료·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 <u>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u>: 기타소득 <u>16.5%</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p>	<p>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u>요양</u>,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 <u>부득이한 연금의수령시 과세</u>: 기타소득 <u>13.2%</u>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p>

[표 1]

정정전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0. 3. 29.	최초 설정

정정후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0. 3. 29.	최초 설정
2010. 7. 26.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연 0.05% -> 연 0.04%)
2012. 1. 9.	운용전문인력 변경 (박경림 -> 유재홍)
2012. 4. 24.	운용전문인력 추가 (유재홍 -> 유재홍, 박경림)
2013. 4. 10.	종류 C-P 신설
2013. 6. 19.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연0.028% -> 연0.025%)

□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